## いたまけ

## 노동부

수신자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장(근로감독과장)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

- 1. 2008.10.27.자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귀 지청의 질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지침(2007.12, 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 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장애인 활동보조인)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 활동단말기를 통해출·퇴근시간의 통제 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대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타당할 것임. 끝.

## 노 동 부 장 관

SECURITARIA DE LA CAMBILIDA DE	ACTIVITY AND DESIGNATION OF A STATE OF A STA	THE THEORY OF THE PROPERTY OF	Zallowicki kar yan manana mana		To a second control of the second control of
★행정주사	김구연	행정사무관	엄대섭	과장	전결 11/05 김 <b>제락</b>

협조자

시행 근로조건지도과-4919 ( 2008.11.05. ) 접수 @D-@N ( 우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 과천청사 제5동) / http://www.molab.gc.kr 전화 02-503-9742 /전송 02-503-9743 /( ) / 공개